

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	2014. 10. .
발 의 자	양진오 의원 외 11명

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양진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4. 10.

발 의 자 양진오, 강승수, 권기만
김근아, 김복자, 김태근
박세진, 손홍섭, 안주찬
윤종호, 정하영, 허복의원

1. 제안이유

- 노인인구 및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대한노인회 구미시 지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
-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노인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정책 대안을 강구하고자 구미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를 조례에 명문화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대한노인회 구미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비용을 보조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명시(안 제4조의2)
-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·반영(안 제4조의3)
- 노인복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후 평가하고, 평가 결과를 4년마다 구미시 의회에 보고.(안 제4조의4 ~ 제4조의6)
- 노인 복지에 관련한 지원 시책 마련(안 제4조의7)
-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 등 자문·심의를 위해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(안 제4조의8)
-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구성·운영(안 제4조의9 ~ 제4조의13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, 제5조

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의2(제4조의2부터 제4조의7까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장의2 노인지회 지원 및 노인복지 기본계획 등

제4조의2(노인지회 지원) ① 시장은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지회 조직·운영에 관한 사항
2.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
3.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·운영
4.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
5.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·학술진흥·홍보출판
6.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
7.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

③ 시장은 노인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의3(기본계획수립) ① 시장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.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구미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

심의를 거쳐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계획에 반영한다.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2. 노인복지 정책의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
3.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4.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
5.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
6. 그 밖의 노인복지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은 4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기본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4조의4(업무의 협조)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노인보호 전문기관, 법률기관,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4조의5(공청회 개최 등)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제4조의6(시행계획 수립)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4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,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4년마다 구미시의회에 보고한다.

제4조의7(노인복지 지원시책) 시장은 노인복지 지원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대상에 따라 수립한다.

1. 건강증진 사업
 - 가.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
 - 나.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 사업

다. 금연, 절주,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

라. 자살, 우울증 등 정신보건 사업

마.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예방

바.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

사. 건강검진사업 등

2. 건강관리사업

가.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관리

나. 저소득, 독거노인 방문보건활동

다. 경로당 및 시설 이용 노인 건강관리

라. 지역사회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

마.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

바.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등

3. 실태조사

가. 노인의 소득·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

나. 노인의 부양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

다. 노후 준비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등

라.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,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

4. 노인복지 시설 사업

가. 노인주거복지 사업

나. 노인의료복지 사업

다. 노인여가복지 사업

라. 재가복지시설에 관한 사업 등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장의3(제4조의8부터 제4조의13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장의3 구미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

제4조의8(설치 및 기능) ①시장은 제4조의3 및 제4조의6에 의한 기본계획 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를 하기 위하여 구미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·심의 하여 4년마다 개최되는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계획에 반영한다.

1. 구미시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구미시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3. 구미시 노인복지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의9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시의회 의원 2명
2. 노인복지 업무담당 부서장
3. 노인복지와 관련된 기관·단체 임직원
4.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5.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으로 한다.

제4조의10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의11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조의12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
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때
3.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4.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4조의13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활동)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.

1.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
2.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
3.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·운영
4.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
5.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
6.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·교육훈련·학술진흥·홍보출판·국제교류 등의 업무
7.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
8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
9.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

제3조(협조 및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·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생략)

제5조(비용의 보조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개인,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,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설></u>	<u>제1장의2 노인지회 지원 및 노인복지 기본 계획 등</u> <u>제4조의2(노인지회 지원) ①</u> 시장은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u>②</u>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u>1. 노인지회 조직·운영에 관한 사항</u> <u>2.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</u> <u>3.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·운영</u> <u>4.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</u> <u>5.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·학술진흥·홍보출판</u> <u>6.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</u> <u>7.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</u> <u>③</u> 시장은 노인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.
<u><신설></u>	<u>제4조의3(기본계획수립) ①</u>시장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. <u>②</u>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구미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복지계획에 반영한다. <u>③</u>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u>1.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</u> <u>2. 노인복지 정책의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</u> <u>3.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</u>

<신설>

- 4.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
- 5.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의 노인복지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은 4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기본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4조의4(업무의 협조)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노인보호 전문기관, 법률기관,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<신설>

제4조의5(공청회 개최 등)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<신설>

제4조의6(시행계획 수립)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4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,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4년마다 구미시의회에 보고한다.

<신설>

제4조의7(노인복지 지원시책) 시장은 노인복지 지원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대상에 따라 수립한다.

1. 건강증진 사업

가.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

나.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 사업

다. 금연, 절주,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

라. 자살, 우울증 등 정신보건 사업

마.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예방

바.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

사. 건강검진사업 등

2. 건강관리사업

<신설>

가.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관리

나. 저소득, 독거노인 방문보건활동

다. 경로당 및 시설 이용 노인 건강관리

라. 지역사회 의료 재활 및 직업재활

마.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

바.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등

3. 실태조사

가. 노인의 소득·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

나. 노인의 부양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

다. 노후 준비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등

라.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,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

4. 노인복지 시설 사업

가. 노인주거복지 사업

나. 노인의료복지 사업

다. 노인여가복지 사업

라. 재가복지시설에 관한 사업 등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장의3 구미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

제4조의8(설치 및 기능) ①시장은 제4조의 3 및 제4조의6에 의한 기본계획 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를 하기 위하여 구미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·심의하여 4년마다 개최되는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계획에 반영한다.

1. 구미시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2. 구미시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<신설>

3. 구미시 노인복지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의9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시의회 의원 2명
2. 노인복지 업무담당 부서장
3. 노인복지와 관련된 기관·단체 임직원
4.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5.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으로 한다.

<신설>

제4조의10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<신설>

제4조의11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<신설>

제4조의12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

<신설>

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
아니한 때

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
남용한 때

3.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
해촉을 원할 때

4.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
하다고 인정될 때

제4조의13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
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
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구미시
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
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
있다.